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법률 제2171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촉물자 무상공급 절차 및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촉물자 무상공급 절차 규정 신설(제35조의2 신설)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이 비촉물자의 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바, 구체적인 비촉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을 규정함

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조달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제44조 및 별표 2 개정)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조달기업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과 기준을 별표 2에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없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 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익적 목적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무상공급의 목적, 필요성,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품명·수량 및 사용계획을 적은 무상공급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청 내용과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물자의 무상공급
공고, 신청·접수 및 심사, 공급 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44조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
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2. 개별기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자료제출 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1호	200	400	800
나.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자료를 거 짓 자료로 제출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1호	300	600	1000
다.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조사를 정 당한 사유 없이 거 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2호	500	800	1000
라. 법 제33조제4항 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보 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1호	50	100	150
마. 법 제33조제4항 을 위반하여 관련	법 제35조제2항 제1호	100	150	200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 우				
바. 법 제33조제5항 에 따른 자료제출 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2호	50	100	150
사. 법 제33조제5항 에 따른 자료를 거 짓 자료로 제출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2호	100	150	200
아. 법 제33조제5항 에 따른 점검을 정 당한 사유 없이 거 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3호	200	25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 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u> <u>1. 국가기관</u> <u>2. 지방자치단체</u> <u>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u>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익적 목적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u> <u>②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무상공급의 목적, 필요성,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품명·수량 및 사용계획을 적은 무상공급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경제</u>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35조제1항</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u>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청 내용과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물자의 무상공급 공고, 신청·접수 및 심사, 공급 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u>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35조제1항 및 제2항</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36